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목적 조항에 어린이집 운영 재원의 교부금 사용
근거 마련〉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26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목적 조항에 어린이집 운영 재원의 교부금 사용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

3. 회부연월일 : 2024.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Ⅲ. 검토의견

□ 목적 조항에 어린이집 운영 재원의 교부금 사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목적 조항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u>재원(財源)</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재원(財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u>재원의</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u>행정 운영</u> 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행정 운영 등----- ----- -----.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은 국가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현행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됨.

구체적으로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구성되고, 교육세의 일부와 내국세분의 97%를 합한 금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내국세분의 3%를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는 같은 법 제5조의3에 특례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달리 정하고 있음.¹⁾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③ (생략)

[본조신설 2023. 12. 31.][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재원		교부기준
보통교부금(제3조) ① 내국세의 20.79%의 97% + ② 교육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제3조, 제5조의2) ① 내국세의 20.79%의 3%	국가시책(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재난안전관리(10%)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 검토 후 교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제5조의3) 2024.1.1. ~ 2026.12.31.		보통교부금: ① 내국세의 20.79%의 96.2% + ② 교육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전출분) 특별교부금: ① 내국세의 20.79%의 3.8%

자료: 교육부

한편, 현재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①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²⁾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②유치원은 「유아교육법」³⁾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임.

다만, 3~5세 유아에 대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를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4조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어린이집 간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일부 연계 운영되고 있음.

참고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평회계”라 함)는 2012년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⁵⁾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3)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4) 「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③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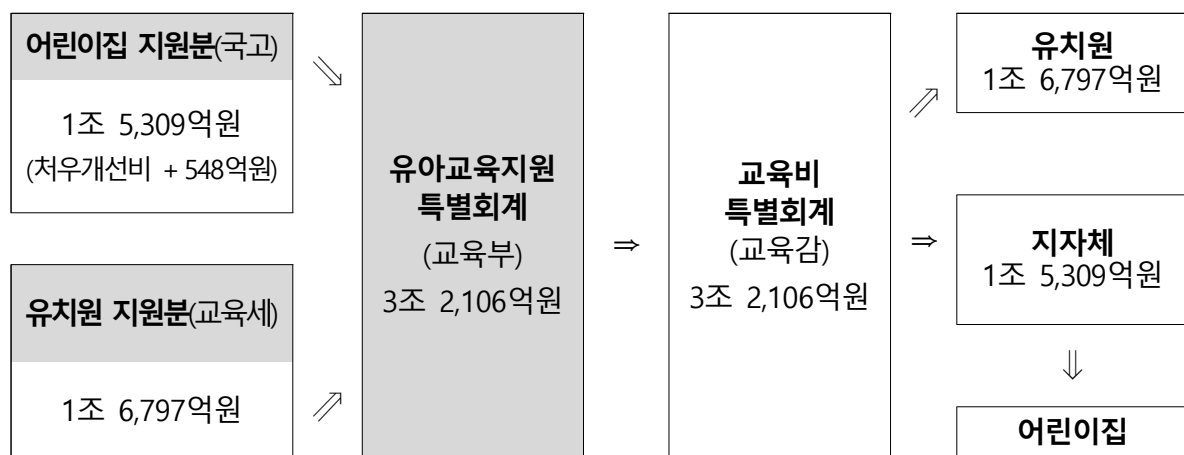
5) 도입 첫해인 '12년에는 교부금으로 5세 유치원학비 및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였고, '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하면서 '13~'14년에는 유치원교육비는 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였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일부 국비·지방비로 부담함. '15년부터는 누리과정 운영비용 전액을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분담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발생함. 갈등

따라 신설된 한시 재원('25.12.31. 만료)으로,⁶⁾

유치원 원비 등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국고(교육부)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유특회계로 전출하여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구조임.

2024년도 기준 영유아 교육·보육예산은 누리과정분(3조 2,106억원)을 포함한 17조 1,239억원 규모로, 유아교육(유치원) 5조 6,450억원과 영유아보육(어린이집) 11조 4,789억원으로 구성되며, 누리과정을 제외한 유아교육 재정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교부금, 영유아보육 재정은 교육부의 국고와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국고대응투자, 특수보육시책)를 통해 마련하고 있음.

【누리과정 예산 지원 구조(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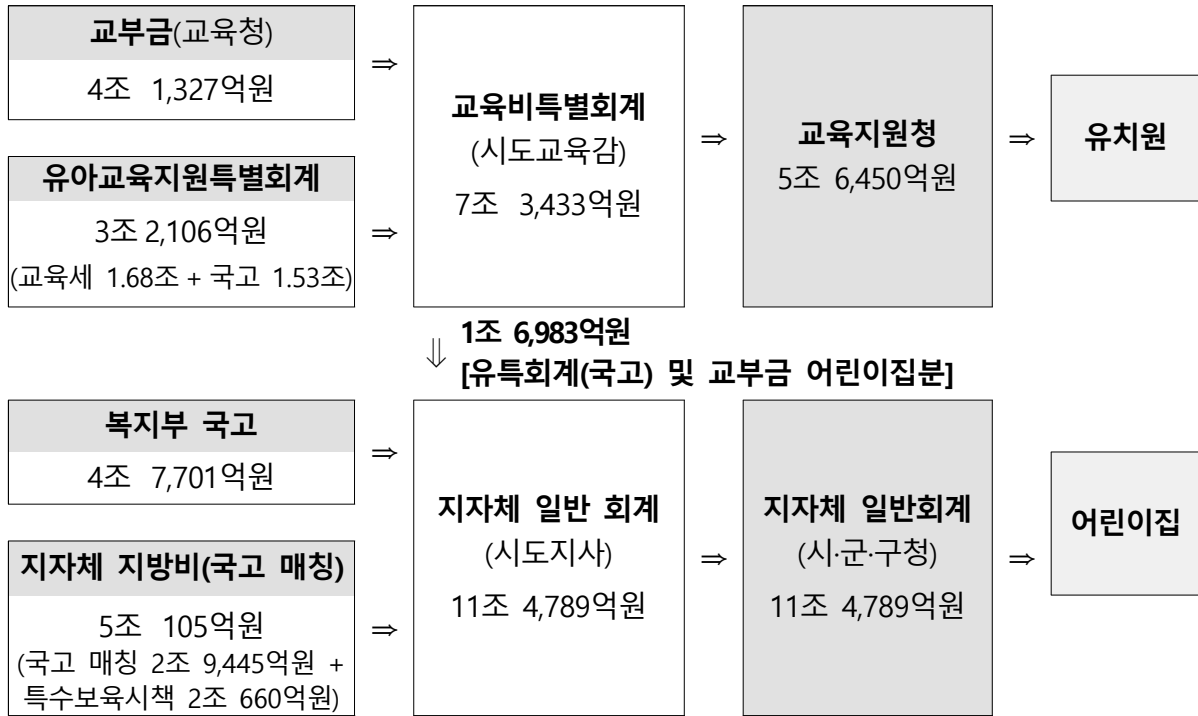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해소를 위해 '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7년에는 국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일부 재원을 분담하다가, '18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있음.

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16.12.20.)·시행('17.1.1.), 일몰기한 2차례 연장(2019.12.31. → 2022.12.31. → 2025.12.31.)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집행체계(2024년)】



자료: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규모(2024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총계	누리과정 비용			기타 교육·보육비용		
		예산	재원	소관	예산	재원	소관
유아교육 (유치원)	56,450	16,797	유특회계 (교육세)	교육부	39,653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114,789	15,309	유특회계 (국고)	교육부	47,701	국고	교육부
					1,674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29,445	지방비 (국고매칭)	지자체
					20,660	지방비 (특수보육시책)	지자체
계	171,239	32,106			139,133		

자료: 교육부

개정안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제1조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하고, 개정안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재정수요에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 외에 필요한 산출 요소를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유보통합의 완성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함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를 교부금 산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23.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를 선정('23.5.15.)하여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사업(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재원⁷⁾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 및 지역협의체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였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유보통합 추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재원 확보에

7)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도 재원은 542.6억원(교육청 455.3억원, 지자체 58.1억원, 특별교부금 29.2억원)임.

관한 사항이나,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관 방식, 재정이관 규모, 이관시점 등이 현재 협의 중으로 세부적인 비용 추계나 재원 조달방안 등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교육부는 ①이관방식에 있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일괄 이관을

8)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3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①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세부 이관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특히 경과 기간 동안 ①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정 정비, ②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③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 기구로서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 강화 추진(’24.~)
* 사·도·시·군·구·시·도교육청별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육 조례 등

②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비용지원구조 개편) ①기관 유형, ②수요자 선택권, ③기관 자율성 ④서비스 질 제고를 고려하여, 통합기관 유형별 지원구조 개편 검토
※ (現유치원) 기관 유형에 따라 비용지원구조 설계
(現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①인건비 지원유무, ②연령(0~2세, 3~5세)에 따라 설계
- 통합기관 유형별 비용지원구조 및 항목 설계 및 관련 법령 및 제도·지침 마련
※ 기관 현황 지역별 인구 추계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 효율적 지원구조 방안 마련
-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과정에서 누수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통합적 재정기반 마련 필요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이원화 구조(유아교육특별회계*, 복지부 국고)의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 취학직전 3년의 유아(3~5세)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25.12월 종료 예정)
-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회계 법안 마련 및 관계기관, 국회 등과 협의·소통 및 법안 통과 추진(’24.)

원칙으로 하면서도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식을 확정할 예정이고, ②재정이관 규모도 현재 영유아보육 관련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대응예산과 지방자치단체별 시책사업예산을 성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③이관시점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실제로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법률 개정 및 시행까지의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국가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본법」⁹⁾상 ‘학교(교육기관)’가 아니므로 개정안과 같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자원’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부 목적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 재원으로 규정하면서도,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

9)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하되, 유특회계의 유효기한까지는 유특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도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음.¹⁰⁾

또한, 개정안 제2조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재정수요에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 외에 필요한 산출 요소(행정 운영→행정 운영 “등”)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로 추가하려는 산출 요소¹¹⁾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임.

10)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 ④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	-----------------	------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따른 측정항목은 “1. 교직원 인건비, 2. 학교운영비, 3. 교육행정비, 4. 교육복지 지원비,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6. 유아교육비,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8. 고교무상교육지원, 9. 재정결합 보전”임.

셋째,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고, 세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큰 보조금으로, 개정안과 같이 교부금의 재원 규정(제3조)은 그대로 둔 채 그 사용범위(제1조)만 확대하는 경우,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최근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①'20년부터 4년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도록 경비 부담의 특례를 두었고(제14조 신설, '19.12.3.),¹²⁾ ②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을 위한 재정 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4년부터 3년간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하는 특례 규정(제5조의3 신설, '23.12.31.)¹³⁾을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법률 제16673호(2019. 12. 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생략)

[본조신설 2023. 12. 31.][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두어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감액한 바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¹⁴⁾는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지원·이관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하고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소요예산 추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재하므로 세부 과제별 소요예산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대응예산과 시책사업예산의 이관 범위를 포함한 어린이집 재원 부담 주체의 결정, 이에 따른 소요재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반 사항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무·재정·인력의 이관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음.¹⁵⁾

1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 8.), p. 8-9 참고

15) 교육부는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24년도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어 안정적 이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주요 개정으로 다음을 제시함. 다만, 2024. 9. 23. 기준 정부안 제출 사항은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자체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 근거 마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자체 보육 관련 예산 이관 및 교육감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 이관 대상 사무의 관리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예산의 이관범위 및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 재정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 개정에 앞서 유보통합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회계 및 전입금 설치 등을 포함한 국비·지방비 이관 방법 구체화를 통해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또한, 교육부는 유보통합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우선 시도교육감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사무를 이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이후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개정안에 대하여 시도교육청¹⁶⁾,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관계기관은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유·초·중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16) 10개 시도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교육청)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하기 위해
사무, 조직·인력, 예산에 대한 이관방안을 일관성 있게 마련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동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